

2000. 4. 19(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 문화진흥국

관광건설위원회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00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99. 12월 종합관광안내소가 완공됨에 따라 원활하고 체계적인 관광 안내의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시행 하여 우리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지역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관광안내소의 위치 : 청주시에 설치

※ 대지 62.09평, 건물 53.5평(1층 35.7, 2층 17.8평)

○ 관광안내소의 기능

-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 지역별·기능별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 관광안내소의 운영요원

- 임명 : 도지사(외국어통역안내원 자격소지자 우선 임용)
- 소속 : 직영운영시 충청북도, 위탁운영시 수탁자 소속
- 복무 :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 관광안내소의 위탁

- 직영 및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에 위탁
-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판매대금은 해당업체에 반환

- 근거규정 : 시·도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지침
(문화관광부 지침)

○ 예산사항

- 운영비 : 70백만원(국비 35, 도비 35)

※ 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제세공과금 등

5. 검토의견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우리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원활하고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지역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99. 12월 완공된 충청북도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